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12. 22 선고 2021가단108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

피 고 E

변 론 종 결 2021. 12. 1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경북 의성군 F 전 245평 중, 원고 A에게 192/2205 지분에 관하여, 원고 B, C, D에게 각 128/2205 지분에 관하여 각 2021. 5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박기범

별지